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임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의 정원 5명(5급 5명) 및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18일 까지에서 2028년 8월 1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4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의 정원 8명(5급 5명, 7급 2명, 8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5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14”를 “41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13”을 “41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5”로,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13”을 “415”로 하고, 일반직 계 “412”를 “414”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6”으로, 행정사무관 “16”을 “17”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5”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2”를 “79”로, 행정주사 “21”을 “2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3”을 “55”로,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1”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를 “1”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5”를 “6”으로, 운전서기 “2”를 “1”로, 운전서기보 “1”을 “2”로 한다.

별표 3의2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5”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2”를 “21”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총리령 제168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89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중 “2026년 8월 18일”을 “2028년 8월 18일”로, “2026년 8월 19일”을 “2028년 8월 19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8월 18일”을 “2028년 8월 18일”로, “2026년 8월 19일”을 “2028년 8월 1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3월 2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3월 2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총리령 제168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제168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 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및 운전서기 1명은 2026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3월 3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1의2의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삭 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은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14	416	+2
·	·	·	
·	·	·	
일반직 계	413	415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	25	+3
·	·	·	
·	·	·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1	-1
·	·	·	
·	·	·	

<u>2026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3월 3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 정서기 1명으로 본다.</u>	
총리령 제189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제189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 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 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 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 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명)은 <u>2026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 으로 본다.</u>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8년 8월 18일</u> ----- <u>2028년 8월 19일</u> ----- ----- ----- ----- -----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 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u>2026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 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u>	② ----- ----- ----- <u>2028년</u> <u>8월 18일</u> ----- <u>2028년</u> <u>8월 19일</u> ----- ----- -----.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13</u>	<u>415</u>	+2
·	·	·	
·	·	·	
일반직 계	<u>412</u>	<u>414</u>	+2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u>25</u>	<u>26</u>	+1
행정사무관	<u>16</u>	<u>17</u>	+1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2</u>	<u>25</u>	+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	<u>82</u>	<u>79</u>	-3
·	·	·	
·	·	·	
행정주사	<u>21</u>	<u>20</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	<u>53</u>	<u>55</u>	+2
행정주사 · 세무주사 · 통 계 주사 또는 전산주사	<u>2</u>	<u>1</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2</u>	<u>1</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5</u>	<u>6</u>	+1
운전서기	<u>2</u>	<u>1</u>	-1
·	·	·	
·	·	·	
운전서기보	<u>1</u>	<u>2</u>	+1
·	·	·	
·	·	·	

[별표 3의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u>4</u>	<u>5</u>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 사무관	<u>22</u>	<u>21</u>	-1
·	·	·	
·	·	·	